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재산세 부과 안내																
구분	재산세(주택)	과세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li> </ul>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납세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li> </ul>															
공정시장 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 (=)	납부지연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li> </ul>															
과세표준 (×)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액] (×)	<p><b>※ 계산식</b>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66% × 경과월수)</p>																
세율 (=)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표준세율</th><th>세율특례</th></tr> </thead> <tbody> <tr> <td>6천만원 이하</td><td>0.1%</td><td>0.05%</td></tr> <tr> <td>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td><td>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td><td>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td></tr> <tr> <td>3억원 초과</td><td>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td><td>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td></tr> </tbody> </table> <p>※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p>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과세표준 상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산정되는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li> </ul>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산출세액 (-)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p><b>※ 과세표준상한액</b>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 연도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p>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세부담 상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li> </ul>															
세부담상한 초과액 (=)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시가격</th><th>3억원 이하</th><th>6억원 이하</th><th>6억원 초과</th></tr> </thead> <tbody> <tr> <td>상한율</td><td>105%</td><td>110%</td><td>130%</td></tr> </tbody> </table>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p><b>구제신청 기한 안내</b></p>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li> </ul>															
		심판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li> </ul> <p>*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p>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가액 또는 제1항제2호에 시가표준액 따른 비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0.04%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b>지방자치단체 활용란</b>																		